

손해배상액의 정기금 지급방법에 관한 연구

마 승 렬*

본 연구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정기금 지급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일시금 지급방법에 비해 피해자 측면에서 보다 높은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험회사 측면에서도 정기금 지급방법을 오히려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보험회사에서 향후 정기금 지급방법의 보다 구체적 세부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기금 지급계획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 우리는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는 정기금 지급계획은 손해배상액을 이중적으로 과소평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현실성 있는 순할인비율을 감안하여 상실수익액의 일시금 현가를 산정한 후 합리적인 현가에 근거한 미래의 정기금 지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Key Word : 정기금 지급, 상실수익액

I. 서론

상실수익액 등 손해배상액의 현가 산정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법원은 호프만식 산정방법, 자동차보험에서는 라이프닛쓰식 산정방법을 수 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최근 김주동·마승렬(1999a, 1999b, 2000), 마승렬(2001a,b,c,d) 등의 연구에 의하면 현행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이 합리적인 경제적 확실성을 가지지 못하는 매우 불합리한 산정방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제 이들의 연구를 시작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 의한 현재까지의 개선방안은 상실수익액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다.

* 삼한손해사정사무소 소장, 손해사정인, 경영학박사(e-mail: samhan12@hanmail.net)
본 논문의 개선을 위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세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실무에서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지 않고 정기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는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법원 판례나 자동차보험 약관규정에 근거하면 손해배상액은 정기금 지급방법에 의해 일 정기간 순차적으로 지급 받는 방법의 선택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채무자의 피해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일시금 배상과 정기금 배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하고(대판 1970. 7.24, 70다621; 대판 1988.11. 8, 87다카1032; 대판 1991.10.8, 90다19039; 대판 1995. 2.28, 94다31334), 재산 상 손해 중 기대수입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정기금 지급 청구권과 일시금 지급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대판 1991. 5.14, 91다8081; 대판 1991. 1.25, 90다카27587; 대판 1990.11. 9, 90다카26102; 대판 1968. 4.23, 68다171), 다만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 하고 정기금배상으로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다¹⁾. 이와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2000.7.28. 2000다11317, 손해배상(자) 사건의 재판요지는 다음과 같다²⁾.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 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적 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다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2]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

1) 이주홍(1996), pp.360-361 참조.

2) 로앤비(<http://www.lawnb.com>)의 판례 자료(2002.07.15) 참조.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

-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향후 치료비 및 간호비 손해에 대하여는 가동연한 이내로서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으로서 원고가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는 일실수의 손해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정기금 지급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현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도 약관 제17조(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직접 청구와 지급)의 제⑨항 규정으로 정기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는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 <별표1>의 보험금지급기준에서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의 간호비(가정간호비) 지급은 퇴원일로 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의 정기금배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정기금 배상을 명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할 것이며, 자동차보험에서는 어쩌면 정기금 지급사례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³⁾.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시불 배상과 정기금 배상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3) 필자가 우리나라 상위 4개 손해보험회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 회사별로 구체적인 정기금 지급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본 바 약관 규정 외에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을 마련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기금 배상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으며 어떤 주(州)에서는 정기금 배상을 강제화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와 같이 정기금 배상에 보다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일시불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액 수령권자가 고액의 일시불 보상금액을 운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한꺼번에 다 날려버릴(blowing)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즉 정기금 배상방식의 원칙을 고수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일시불 보상에 비해 정기금 보상이 피해자를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로 근거한다(이주홍(1996), Romans and Floss(1999)). 따라서 교통사고 등에 의한 중한 상해로 인해 고도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경우 또는 사망사고의 유족 측에서 일시금의 보상액을 지급 받은 이후 고액의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운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방법 보다는 정기금 지급방법이 이들에게는 보다 바람직한 손해배상액 지급방법이 될 수 있다. 정기금 지급은 일시금 현가를 근거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급을 계획할 수 있는데, 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여명까지 또는 확정기간까지 매월 정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Prahl, Utrata, and Hodosh(1985))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위험과 손해액 현가의 평면상에서 변형함수(transformation function)곡선과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을 사용하여 일시금 지급방법과 정기금 지급방법 간의 선택문제에 있어서 피해자 측에서 취하게 될 선택조건을 확인하며, 정기금 지급방법이 일시금 지급방법에 비해 더 선호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3장에서는 각 보험회사에서 향후 정기금 지급방법의 보다 구체적 세부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의 일시금 지급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상실수익액의 현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현가를 가져다주면서 미래의 일정 기간까지 매기 순차적으로 정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기금 지급 계획에 대하여 살펴본 후 제4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한다.

하고 있다고 회신해준 회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까지 단 1명의 피해자 측에서도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 측에 정기금 지급을 청구한 사례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보험회사 측에서도 정기금 지급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정기금 지급 관련 자동차보험의 약관규정은 명목적인 규정일 뿐이라 할 수 있다.

Ⅱ. 일시금과 정기금 지급방법의 선택 조건

손해배상액의 수령 시 일시불로 지급 받는 경우와 정기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장·단점은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와 보험회사의 양 측면에서 각각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의 측면에서는 일시불 보상금을 향후 운용시에는 이자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연금형태와 같이 정기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매기 지급 받는 정기금이 보상금의 성격이므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매기의 수령액에 예정이율이 적용된 고정적 수익률을 얻게 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른 최적 위험수준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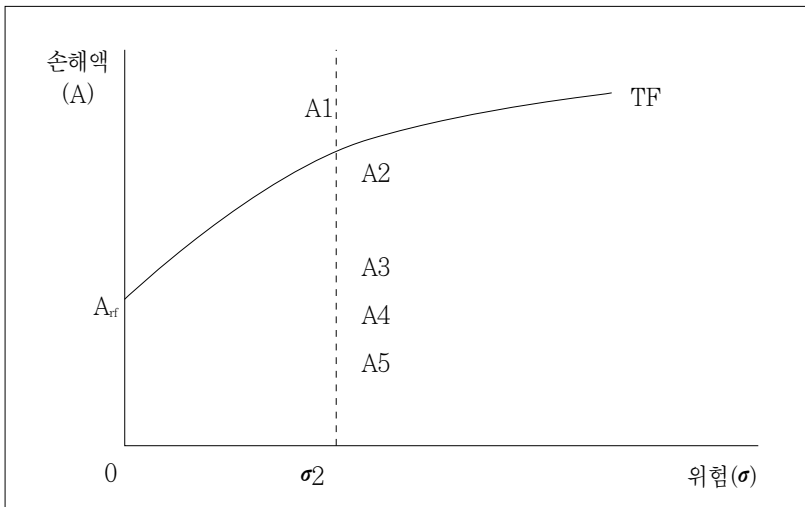
한편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정기금 지급이 관리상의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이미 연금상품이 보험시장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정기금 지급을 통하여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고액의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일시불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오히려 연금형태의 새로운 상품(정기금 지급 상품)의 일시불 보험료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새로운 상품과 고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오히려 정기금 지급을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

일시금 배상방법과 정기금 배상방법 간의 양자 택일 문제에 있어서 배상 방법의

4) 이 때의 고객은 보험금을 지급 할 보험회사와 기존의 보험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당사자(third party)일 가능성이 더 높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손해배상액의 수령권자는 피보험자 측이 아니라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액의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피해자 측이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액 수령권자 측에서 고액의 일시불 보상금을 수령한 후 보상금 전액을 새로운 연금상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본다면, 정기금 지급의 경우 신규 고객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의 손해사정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 대체될 수 있으므로 신규모집 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손해배상액 수령권자 측에서 취하게 되는 손해배상액 지급 방법간의 선택 여부는 보험회사와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보험회사 직원의 손해사정 서비스의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정기금 지급방법의 활성화는 손해사정 서비스의 품질 개선 측면에서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택문제가 오직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의 권리에만 속하는 것이라면 즉, 정기금 또는 일시금 배상방법 중 하나의 배상방법이 강제화 되지 않고 오로지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의 선택여부에 달려있다면 배상방법의 선택문제는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각각 상이한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기금 또는 일시금 배상방법 중 하나의 배상방법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없이 오로지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선택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전제로 분석한다. 다음의 <그림1>에서 횡축은 위험수준(σ), 종축은 손해액의 현가 수준(A)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1> 위험(σ)과 손해액 현가(A)의 수준과 변형함수(TF)곡선



손해배상액 수령 시 일시불 보상을 받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수령권자는 향후 고액의 일시불 보상을 이용하여 투자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때 자본시장에서 손해배상액 수령권자가 취하게 되는 적절한 위험수준의 선택을 통해 손해액의 현가(A)와 위험수준(σ) 간에는 적절한 교환이 이루어 지게 되는데 <그림1>에서 TF곡선은 이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액의 현가(A)와 위험수준(σ) 간의 교환에 따른 변형함수(Transformation function)를 나타낸다. TF곡선의 형태는 위험수준의 증가에

따라 손해액의 현가도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형태는 밑면에 대하여 오목한 (concave) 형태 즉,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준다⁵⁾. 여기서 손해배상액을 일시불로 수령한 후 무위험 수익률로만 운용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현가수준은 TF곡선과 중축이 만나는 Arf의 수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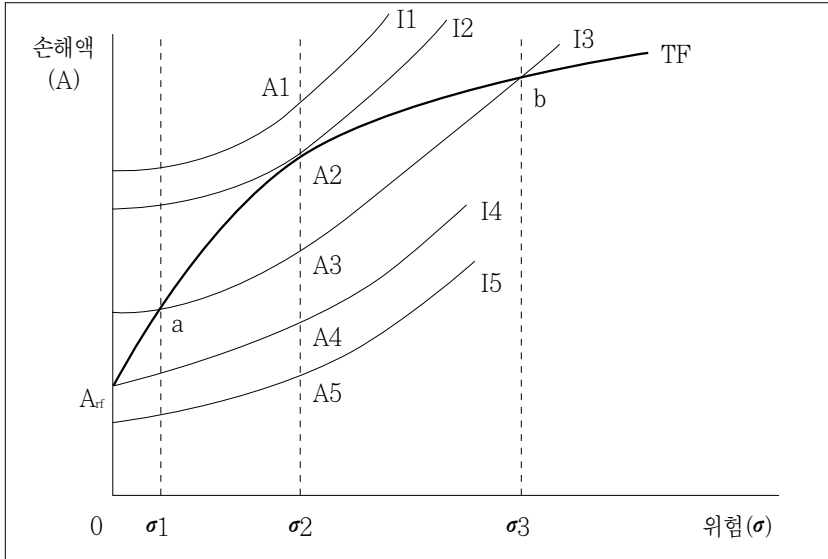
위의 그림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σ_2 의 위험수준은 정기금 지급 시의 정기금(연금)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수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는 정기금 지급 상품 설계 시의 고정된 위험수준을 나타낸다⁶⁾. <그림1>에서 정기금 지급 상품의 위험수준인 σ_2 의 위험수준에서의 손해배상액의 현가수준은 각각 A1~A5 까지로 분석의 편의 상 5가지의 경우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이제 σ_2 의 위험수준에서 정기금 지급 상품의 손해배상액의 현가수준이 A1~A5 등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시금 지급과 정기금 지급에 대한 선호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임을 무차별곡선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2>에서 I1~I5 까지의 곡선은 손해배상액의 현가(A)와 위험수준(σ) 간의 교환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에게 각각 동일한 효용수준을 가져다주는 손해액의 현가(A)와 위험수준(σ) 간의 조합을 의미하는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의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을 나타낸다. 무차별곡선의 형태는 밑면에 대하여 볼록한 (convex)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⁷⁾.

- 5) 본 연구에서의 변형함수곡선의 형태는 밑면에 대하여 오목한(concave)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포트폴리오(portfolio)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의 안쪽에 존재하는 어떠한 수익과 위험의 조합도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존재하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에 비해 효율적인 조합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 정기금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수준은 무위험(risk free)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험수준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기금 지급이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향후 그 기간동안에 노출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위험 등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위험프리미엄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7) 이러한 형태의 무차별곡선은 위험회피형의 효용함수($U'(\cdot) > 0, U''(\cdot) < 0$)를 가진 자의 무차별곡선 형태임을 의미한다. 만일 위험중립형의 효용함수($U'(\cdot) > 0, U''(\cdot) = 0$)를 가진 경우에는 위험과 수익액(손해액 현가)의 평면 상에서 무차별곡선의 형태는 기울기가 0인 수평선이 되고, 위험선호형의 효용함수($U'(\cdot) > 0, U''(\cdot) > 0$)를 가진 경우에는 밑면에 대하여 오목한 형태의 우 하향하는 무차별곡선의 형태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투자에서 위험중립형이나 위험선호형의 투자자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처럼 위험회피형의 가정이 보다 더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2〉 손해액의 현가(A)와 위험수준(σ) 간의 관계



〈그림2〉에서 I1~I5 까지의 무차별곡선은 정기금 지급방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현가수준을 나타내는 점인 A1~A5를 통과하는 곡선의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⁸⁾.

정기금 지급시의 손해배상액의 현가수준이 A1과 같은 수준인 경우에는 일시불로 지급 받은 보상액의 운용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효용수준이 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언제나 정기금지급이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에게는 더 선호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정기금 지급시의 손해배상액의 현가수준이 A2와 같은 수준인 경우에는 무차별곡선 I2와 변형함수곡선 TF가 서로 접하는 수준이므로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수령권자가 σ_2 의 위험수준에서 일시불 보상금을 운용하게 되면 일시불 지급과 정기금 지급 간의

8) 본 연구는 재무이론에 근거한 최적의 위험-수익간의 조합에 대한 선택능력을 보유한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의 경우를 가정한 분석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과거 자본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가정에 의한 분석결과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변형함수와 무차별곡선을 이용한 재무이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개별적 사안에 따라 정기금지급 방법이 현행의 일시금지급 방법 보다 더 선호될 경우가 있음을 보이고자하는 본 연구의 분석목적상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선택 문제는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에게는 무차별하게 된다. 그러나 일시불로 지급 받은 금액을 σ_2 의 위험수준 이외의 위험수준 하에서 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시불 지급에 비해 정기금 지급이 더 선호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정기금 지급시의 손해배상액의 현가수준이 A5와 같은 수준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수령권자가 이 금액을 현실성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의 위험 하에서 운용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경우에는 언제나 일시불지급 방법이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에게는 더 선호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정기금 지급시의 손해배상액의 현가수준이 A4와 같은 수준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수령권자가 일시불 보상액을 모두 무위험수익률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정기금 지급과 일시불 지급방법 간에 무차별한 효용의 정도를 보여줄 것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앞의 A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수령권자가 이 금액을 현실성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의 위험 하에서 운용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경우에도 언제나 일시불지급 방법이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에게는 더 선호되는 방법이 될 것이다⁹⁾.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달리 위의 그림에서 무차별곡선과 변형함수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일시불 지급과 정기금지급 간의 선택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위의 그림에서 정기금 지급 시의 손해액 현가 수준이 A3인 경우 A3를 지나는 무차별곡선 I3와 일시불 지급 시의 변형곡선 TF가 서로 만나는 점을 a와 b로 나타내고 있으며 a점에서의 위험수준은 σ_1 , b점에서의 위험수준은 σ_3 이다. 이 경우 위험수준이 σ_1 의 수준 보다 더 낮은 수준 즉, Arf에서 점 a에 이르기

9)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시금의 보상액을 지급 받은 이후 고액의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운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방법 보다는 정기금 지급방법이 이들에게는 보다 바람직한 손해배상액 지급방법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상속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될 고액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가족간에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정기금지급 방법을 보다 더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금지급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현가(A5)를 통과하는 무차별곡선이 일시금지급 시의 무위험수익률에 의한 현가(Arf) 수준을 통과하는 무차별곡선 보다 더 낮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즉, <그림2>에서의 I5와 같은 무차별곡선을 가진 경우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수령권자는 일시금지급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Arf 수준보다 더 낮은 현가수준을 보여주는 A5수준의 정기금지급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까지의 구간에서 일시불 보상을 운용하게 될 손해배상액 수령권자는 일시불 지급보다는 정기금 지급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며, 점 a에서 점 b까지의 구간에서 일시불 보상을 운용하게 될 손해배상액 수령권자는 정기금 지급보다는 일시불 지급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점 b의 위험 수준은 σ_3 로 표시되어 있는데, 손해배상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은 수령권자가 이 금액을 σ_3 이상의 위험수준 하에서 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정기금 지급방법을 일시불 지급 방법보다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점 a의 위험수준인 σ_1 보다는 크고 점 b의 위험수준인 σ_3 보다는 작은 위험 하에서 일시불 보상을 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시불 지급 방법이 정기금 지급방법에 비해 더 선호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해액 현가(A)와 위험(σ)으로 나타낸 평면 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일시불로 지급 받은 경우 고려될 수 있는 위험수준과 손해액 현가의 크기 간의 교환관계를 나타내는 변형함수(TF)곡선과 함께 손해배상액을 연금 형태의 정기금으로 지급 받게 되는 경우의 손해액의 현가(A1~A5) 수준과 동일한 효용수준을 나타내는 무차별곡선(I1~I5)을 이용하여 일시불 지급과 정기금 지급방법 중 손해배상액 수령권자가 선택하게 될 조건(두 방법 중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에게 더 나은 효용을 가져다 줄 조건)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에서 확인되는 것은 일시불 지급과 정기금 지급방법의 선택문제는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의 변형함수(TF)곡선의 형태와 무차별곡선의 형태¹⁰⁾, 정기금 지급 시의 현가 수준(정기금 지급 설계 시 내포되어 있는 위험(σ_2 의 수준)), 일시불 지급액의 운용 시 취하게 될 위험에 대한 개별적 선호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선택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의 특성에 따라 기존의 관행적이고 획일화 된 손해배상액의 일시금 지급방법 보다는 오히려 정기금 지급방법을 취하는 것이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에게는 보다 더 큰 효용의 수준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할

10) 이는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변형함수(TF)곡선과 무차별곡선의 볼록성 및 오목성의 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의미한다. 즉,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위험과 손해액 현가의 교환의 정도가 상이한 변형함수곡선 및 무차별곡선의 형태를 나타낼 것임을 의미한다.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 보상 방법은 비효율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상의 일시금 지급방법과 정기금 지급방법 간의 선택 조건에 대한 분석 결과 기존의 획일화 된 일시금 보상 방법이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에게는 비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손해배상액의 지급방법 중 정기금 지급방법은 현행처럼 명목상의 규정으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와 보험회사 모두 보다 적극적으로 정기금 지급방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액 수령권자 측에서는 정기금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일시금 보상방법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것인지도 모르며, 또 한편으로는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수령권자 측에서는 정기금 지급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기금 지급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두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에게 보험사고 초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인식을 시켜준다면 손해배상액 수령권자 측에서는 개별적 선호도에 따라 일시금 보상방식의 선택보다는 정기금 지급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더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릴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기금 지급을 통하여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고액의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일시불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오히려 연금형태의 새로운 상품(정기금 지급 상품)의 일시불 보험료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새로운 상품과 고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오히려 정기금 지급을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향후 여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처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보험회사에서 향후 정기금 지급방법의 보다 구체적 세부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의 일시금 지급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상실수익액의 현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현가를 가져다주면서 미래의 일정 기간까지 매기 순차적으로 정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기금 지급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I. 정기금 지급 계획

1. 정기금의 초기 값 계산의 간편식

손해배상액은 상실수익액 외에도 위자료, 치료관계비, 개호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진다. 이들 손해배상 항목들 중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인배상의 경우 상실수익액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상실수익액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측에서 미래에 가동가능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액에 대한 손해배상 항목이기 때문에 상실수익액의 계산에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가 계산의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Brookshire and Ireland(1994)에 의하면 순할인율(net discount rate)법에 의해 산정한 상실수익액 현가(PV)를 근거로 하여 정기금 배상을 하는 경우 매기 순차적으로 지급할 정기금의 최초 지급액 수준(a)을 구하기 위한 간편식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¹¹⁾.

$$PV = \sum_{t=0}^{n-1} a \cdot R^t = a \left(\frac{1-R^n}{1-R} \right) \quad \text{식(1)}$$

$$\Rightarrow a = \frac{PV(1-R)}{1-R^n} \quad \text{식(2)}$$

여기서 n = 정기금의 지급기간,

a = 매기 지급될 정기금의 최초의 값,

$$R = \frac{1+g}{1+i} = \text{순할인비율,}$$

(g = 평균임금상승률, i = 평균할인율)

11) 정기금의 지급이 매기 초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한 간편식이므로 매기 말에 지급되는 경우와는 차이가 발생한다.

현실세계를 제대로 반영해 주기 위해 임금상승률과 할인율을 모두 감안하여 산정한 현실성 있는 상실수익액은 위의 식(1)과 같은 순할인율 모형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순할인비율(R) 시계열이 안정적(stationary) 시계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식(1)과 같은 순할인율 모형을 상실수익액 현가 산정에 확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우 순할인비율(R)의 시계열은 안정적 시계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정기금의 지급 계획

위의 식(2)의 간편식을 이용하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예시 1>의 경우에 있어서의 매기 지급될 정기금의 초기 값 수준(a)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예시 1>

상실수익액의 일시불 현가(PV) = 200,000,000원,

정기금의 지급기간(n) = 20년,

평균임금상승률(g) = 연 7%,

평균이자율(i) = 연 8.1%

$$\text{순할인비율}(R) = \frac{1.07}{1.081} = 0.989824$$

$$\text{정기금의 초기 값} : a = \frac{200,000,000\text{원}(1-0.989824)}{1-0.989824^{20}} = 11,001,303\text{원}$$

이제 위의 초기 값(a)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상승률과 동일한 상승률(g)로 매기 정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게 되면 $n=20$ 년까지 지급된 정기금의 누적(cumulative) 현가는 평균이자율(i)의 이율로 할인하게 되는 경우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상실수익액의 일시불 현가(PV)인 200,000,000원과 동일한 값을 갖게 될 것이다.

〈표1〉 일시불 현가에 근거한 정기금의 지급 계획

(단위: 원)

지급회수	정기금계획	할인계수	정기금현가	정기금의 누적현가
1	11001303	1	11001303	11001303
2	11771394	0.925069	10889352	21890655
3	12595392	0.855753	10778540	32669195
4	13477069	0.79163	10668856	43338051
5	14420464	0.732313	10560288	53898338
6	15429897	0.67744	10452824	64351163
7	16509989	0.626678	10346455	74697617
8	17665689	0.579721	10241167	84938785
9	18902287	0.536282	10136951	95075736
10	20225447	0.496098	10033796	105109532
11	21641228	0.458925	9931691	115041223
12	23156114	0.424537	9830624	124871847
13	24777042	0.392726	9730586	134602433
14	26511435	0.363299	9631566	144233998
15	28367235	0.336076	9533553	153767552
16	30352942	0.310894	9436538	163204090
17	32477648	0.287598	9340510	172544600
18	34751083	0.266048	9245460	181790060
19	37183659	0.246113	9151376	190941437
20	39786515	0.227671	9058250	199999687

주) 1. 정기금은 평균임금상승률과 동일한 상승률(g)로 매기 인상 지급 함.

$g =$ 연 7%로 가정 함.

2. 할인계수는 평균이자율(i)의 이율 적용: $i =$ 연 8.1%로 가정 함.

3. 정기금은 매년 초 1회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함.

본 연구에서는 순할인을 모형인 식(1)을 이용하여 상실수익액의 일시불 현가(PV)를 구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매기 순차적으로 일정한 상승률(즉, 평균임금상승률(g))을 반영하여 지급할 정기금의 최초 지급액 수준(a)을 구하기 위한 간편식을 식(2)와 같이 도출하였다.

이러한 방법과는 달리 식(1)을 이용하여 구한 미래 가동가능기간(n)까지의 상실 수익액 현가($PV=200,000,000$ 원)를 근거로 하여 가동가능기간과 동일한 미래 특정시점(n)까지 매기 일정한 금액(a^*)을 지급해 주는 정기금지급을 계획할 수도 있는데, 이때 매기 지급할 일정한 금액의 정기금(a^*)의 값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a^* = \frac{PV}{\sum_{i=0}^{n-1} \left(\frac{1}{1+i} \right)^t} \quad \text{식(2)'}$$

여기서 a^* = 매기 지급될 일정한 금액의 정기금

PV = 상실수익액의 일시불 현재가치

$\sum_{i=0}^{n-1} \left(\frac{1}{1+i} \right)^t = CDF$: 누적할인계수

i = 평균이자율(할인율)

〈예시1〉의 경우 이제 식(2)'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매기 지급할 일정한 금액의 정기금(a^*)의 수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 = \frac{200,000,000\text{원}}{\sum_{i=0}^{19} \left(\frac{1}{1+1.081} \right)^t} = \frac{200,000,000\text{원}}{10.53487} = 18,984,572\text{원}$$

이 경우에 있어서도 $n=20$ 년까지 지급된 정기금의 누적(cumulative) 현가는 평균이자율(i)의 이율로 할인하게 되는 경우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상실수익액의 일시불 현가(PV)인 200,000,000원과 동일한 값을 갖게 될 것이다.

〈표2〉 매기 일정한 금액의 정기금(a^*) 지급계획

(단위: 원)

지급회수	정기금계획	할인계수	정기금현재가	정기금의 누적현재가
1	18984572	1	18984572	18984572
2	18984572	0.925069	17562039	36546611
3	18984572	0.855752	16246097	52792709
4	18984572	0.791630	15028761	67821470
5	18984572	0.732312	13902641	81724112
6	18984572	0.677439	12860902	94585014
7	18984572	0.626678	11897222	106482237
8	18984572	0.579720	11005751	117487988
9	18984572	0.536281	10181079	127669068
10	18984572	0.496097	9418201	137087269
11	18984572	0.458924	8712485	145799755
12	18984572	0.424536	8059650	153859405
13	18984572	0.392725	7455732	161315138
14	18984572	0.363298	6897067	168212206
15	18984572	0.336076	6380263	174592469
16	18984572	0.310893	5902183	180494653
17	18984572	0.287598	5459927	185954580
18	18984572	0.266048	5050809	191005389
19	18984572	0.246112	4672347	195677736
20	18984572	0.227671	4322243	199999980

물론 손해배상액 수령권자 측에서는 위와 같은 정기금지급 계획에 의한 금액과 일시금 보상액과의 선택문제에 있어서 향후 보험회사가 처할 수 있는 불확실성(지급불능 위험 등)에 대한 보장 장치가 없다면 위와 같이 일시금 보상액과 동일한 현가를 가져다주는 정기금 지급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이와 같은 정기금 지급 계획에는 장기간의 정기금 지급에서 향후 보험회사가 처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후의 정기금지급 논의에서 〈표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매기

순차적으로 일정한 상승률(즉, 평균임금상승률(g))을 반영하는 정기금지급 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¹²⁾.

3. 현행 상실수익액 산정방법과 정기금 지급 계획

현실성 있는 상실수익액의 현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식(1)과 같이 미래의 임금 상승률과 이자율 추이를 반영하는 현실성 있는 모형을 사용하여 상실수익액 현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현실 모형의 적용에 대하여 김주동·마승렬(1999a, 1999b, 2000), 마승렬(2001a,b,c,d) 등의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에 논의가 되어지고, 현행 산정방법이 불합리한 산정방법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오랜 관행에 따른 라이프넷쓰식 산정방법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12) 임금상승률(g)과 명목이자율(i) 각각의 시계열이 모두 안정적 시계열이라 하더라도 비선형(nonlinear transformation)의 순할인비율(net discount ratio : $R_t = (1+g)/(1+i)$) 시계열이 안정적 시계열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반대로 양 시계열이 모두 불안정 시계열이라 하여 순할인비율 시계열 또한 불안정 시계열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을 것이다. 마승렬(2001b)은 단위근검정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g) 시계열은 안정적 시계열이고, 명목이자율(i) 시계열은 불안정 시계열이지만 순할인비율(R) 시계열은 안정적 시계열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시계열데이터의 안정성여부 분석이 중요한 점은 일차 모멘트(moment: 적률) 및 이차 모멘트 들이 시간 t 에 대하여 불변하는 유한한 상수(常數) 일 때 시계열데이터 $\{y_t\}$ 를 안정적 시계열이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분석대상 시계열이 안정적 시계열로 확인되면 우리는 미래 시계열의 예측에 안정적 시계열의 역사적 평균값을 확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되고, 이 경우 예측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표1>은 미래의 임금상승부분을 평균임금상승률(g)을 적용하여 정기금을 지급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g) 시계열이 안정적 시계열로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은 여러 가지의 정기금지급 방법 중 타당성 높은 지급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2>의 경우는 <표1>에서와 동일한 현가(=200,000,000원)를 가져다주는 정기금지급 계획이지만 매기 불변의 일정한 금액(a^*)을 지급하는 방법이라는데 차이점이 있다. <표2>와 같은 방법을 실제에서 사용하는 경우 명목이자율(i) 시계열이 불안정 시계열인 관계로 명목이자율의 평균값(i)을 사용하여 계산된 불변 정기금의 수준(a^*)은 미래의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이자율(i) 시계열을 예측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예측의 어려움에 또한 처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후의 분석에서 자동차보험 실무에서 채택하고 있는 라이프닛쓰식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위의 식(1)에서 순할인비율은 $R = \frac{1+g}{1-d} = \frac{1}{1-d}$ 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d 를 순할인율이라 한다.

여기서 순할인율은 $d = \frac{i-g}{1+g}$ 의 관계가 또한 성립한다. 라이프닛쓰식 산정방법은 위의 식(1)에서의 순할인율(d) 값으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라이프닛쓰식 산정방법에서의 순할인비율(R)은 약 0.952381(= 1/1.05)의 값을 가진다.

위의 <예시1>과 동일한 피해자의 경우 실제의 임금상승률과 이자율을 반영하여 계산하지 않고 현행의 라이프닛쓰식 산정방법에 의해 상실수익액 현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진다.

$$PV = 11,001,303\text{원} \left(\frac{1-0.952381^{20}}{1-0.952381} \right) = 143,955,637\text{원}$$

위의 <예시1>에서의 산정결과와 비교하면 약 56,000,000원의 현가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의 라이프닛쓰식 산정방법은 현실세계를 지나치게 과소평가 하는 산정방법임을 알 수 있다.

<예시1>에서 처럼 정기금의 지급기간(n)=20년, 평균임금상승률(g)=연 7%, 평균이자율(i)=연 8.1%인 현실세계에서 라이프닛쓰식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상실수익액 현가와 동일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초기 값(a)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text{정기금의 초기 값 : } a = \frac{143,955,637\text{원}(1-0.989824)}{1-0.989824^{20}} = 7,918,498\text{원}$$

이제 위의 초기 값(a)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상승률과 동일한 상승률(g)로 매기 정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게 되면 $n=20$ 년까지 지급된 정기금의 누적(cumulative) 현가는 일시금 현가와 동일한 값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연간 지급될 정기금의 초기 값(a)의 수준도 <예시1>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약 3,080,000원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최근 국내 상위 4개 손해보험사에 대하여 각각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금

지급방법과 적용금리에 대하여 문의한 바가 있는데, 이 중 2개의 회사에서는 질문 사항에 대한 회신이 없었고 나머지 2개회사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표3〉 보험회사별 정기금 지급방법과 적용금리

	A 보험회사	B 보험회사
세부규정 여부	별도의 규정 없음	별도의 규정 없음
정기금 청구 시 향후 대처방안	자동차보험약관 제17조 9항에는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내용에 대하여 약관상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음. 따라서 약관 제74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라는 준거법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 됨.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액이 확정된 후 보험금을 정기금으로 요청했을 경우 관계기관(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음.

위의 A사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손해배상액으로 정기금을 청구했을 경우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정기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 5%의 이율을 정기금 지급 시 적용금리로 고려하는 것은 현행의 손해배상액(상실수익액) 현가 산정 시 적용되어지는 이율이 민사법정이율 연 5%라는 점에 근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A사와 같이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을 정기금 지급 시 적용하는 이율로 채택하게 되면 이 때의 손해배상액 수령권자는 이중적으로 과소 평가된 손해배상액을 지급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첫째 이유는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계산되어지는 상실수익액의 일시금 현가가 현실세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위의 계산 예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와 같은 일시금을 근거로 미래의 장기간에 걸친 정기금 지급 계획에 있어서 적용하고자 하는 이율 연 5%는 현실세계의 임금상승률 수준 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데 있다. 1983.01~2000.12(18년 간)의 실제 임금자료에 근거하여 평균 임금

상승률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민사법정이율 연 5%의 수준보다는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4〉 평균 임금상승률:1983.01~2000.12(18년 간)

산업별 구분	임금상승률(연율 %):a	민사법정이율:b	차율:a-b
농업노동임금(남)	9.8%	5%	4.8%
농업노동임금(여)	9.1%	5%	4.1%
전산업 평균임금	10.7%	5%	5.7%
광공업 평균임금	11.2%	5%	6.2%
제조업 평균임금	11.3%	5%	6.3%
건설업 평균임금	9.2%	5%	4.2%
도·소매, 음식·숙박업 평균임금	8.7%	5%	3.7%
운수,창고,통신업 평균임금	10.1%	5%	5.1%

따라서 A사의 정기금 계획과 같이 매기 연 5%의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수령권자 측에서 지급받는 손해배상액이 현실성 없는 현행의 상실수익액 현가 산정방법(라이프넛프식 산정방법)에 의해 일시금 현가가 과소평가 된 이후 정기금 지급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손해배상액이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A사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손해배상액으로 정기금을 청구했을 경우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정기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연 5%의 이율을 정기금 지급 시 적용금리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현실세계에서의 임금상승률 수준이 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타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A사와 같은 정기금 계획을 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는 미래의 정기금 지급 계획에 있어서 임금상승률의 수준 등에 대한 고려보다는 단지 연 5%의 금리를 적용해주는 정기금 계획에 대하여 현실세계에서도 다음의 〈표5〉에서 보여주는 결과와 같이 민사법정이율과 동일한 연 5% 수준의 할인율이 고정적으로 적용되어지기를 바랄 것이다.

〈표5〉 연 5%의 금리를 적용한 경우의 정기금 계획

(단위: 원)

지급회수	정기금계획	할인계수	정기금현가	정기금의 누적현가
1	7918498	1	7918498	7918498
2	8314423	0.952381	7918498	15836996
3	8730144	0.907029	7918498	23755494
4	9166651	0.863838	7918498	31673992
5	9624984	0.822702	7918498	39592490
6	10106233	0.783526	7918498	47510988
7	10611545	0.746215	7918498	55429486
8	11142122	0.710681	7918498	63347984
9	11699228	0.676839	7918498	71266482
10	12284189	0.644609	7918498	79184980
11	12898399	0.613913	7918498	87103478
12	13543319	0.584679	7918498	95021976
13	14220485	0.556837	7918498	102940474
14	14931509	0.530321	7918498	110858972
15	15678084	0.505068	7918498	118777470
16	16461989	0.481017	7918498	126695968
17	17285088	0.458112	7918498	134614466
18	18149342	0.436297	7918498	142532964
19	19056810	0.415521	7918498	150451462
20	20009650	0.395734	7918498	158369960

- 주) 1. 정기금의 초기값은 7,918,498원으로 가정하였음.
 2. 현실세계의 할인율이 연 5%인 것으로 가정하고, 매년 5% 상승한 금액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임.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표5〉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라이프넷쓰식 산정방법에서 적용되어지는 법정이율 연 5%는 명목이자율 수준이 아니라 순할인율(net discount rate)의 수준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라이프넷쓰식 계산 방법에 의해 산정되어진 일시불 손해배상액을 근거로 하여 〈예시1〉에서 사용한 평균임금상승률과 평균이자율 수준을 적용한 정기금 지

급 계획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진다.

〈표6〉 평균임금상승률(연 7%)과 평균이자율(연 8.1%)을 적용한 정기금 지급계획

(단위: 원)

지급회수	정기금계획	할인계수	정기금현가	정기금의 누적현가
1	7918498	1	7918498	7918498
2	8472793	0.925069	7837921	15756419
3	9065888	0.855753	7758164	23514584
4	9700501	0.791631	7679219	31193803
5	10379536	0.732314	7601077	38794880
6	11106103	0.677441	7523730	46318611
7	11883530	0.62668	7447171	53765781
8	12715377	0.579722	7371390	61137171
9	13605454	0.536284	7296381	68433552
10	14557836	0.496099	7222134	75655686
11	15576884	0.458926	7148644	82804330
12	16667266	0.424539	7075901	89880231
13	17833975	0.392728	7003898	96884129
14	19082353	0.3633	6932628	103816757
15	20418118	0.336078	6862083	110678840
16	21847386	0.310896	6792256	117471097
17	23376703	0.2876	6723140	124194237
18	25013072	0.26605	6654727	130848963
19	26763987	0.246115	6587010	137435973
20	28637466	0.227673	6519982	143955955

주) 1.정기금의 초기값은 7,918,498원으로 가정하였음.

상실수익액 현가를 라이프닛쯔식 또는 호프만식 산정방법에 의존하는 현행의 불합리성을 일차적으로 감수하더라도 향후 정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보험회사에서 위의 〈표6〉에 의한 방법처럼 보다 현실성있는 정기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만일 정기금 지급 계획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

을 채택하지 않고 매기 법정이율 연 5%에 의한 정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면 이는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에게 이중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과소지급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민사법정이율 연 5%에 의한 정기금 지급계획에 대하여 <예시1>에서 적용한 평균이자율 연 8.1%를 적용하여 현가를 계산해보면 다음의 <표7>과 같다.

<표7> 평균임금상승률(연 5%)과 평균이자율(연 8.1%)을 적용한 정기금 계획

지급회수	정기금계획	할인계수	정기금현가	정기금의 누적현가
1	7918498	1	7918498	7918498
2	8314423	0.925069	7691418	15609916
3	8730144	0.855753	7470850	23080766
4	9166651	0.791631	7256607	30337374
5	9624984	0.732314	7048509	37385882
6	10106233	0.677441	6846377	44232260
7	10611545	0.62668	6650043	50882302
8	11142122	0.579722	6459339	57341641
9	11699228	0.536284	6274103	63615744
10	12284189	0.496099	6094180	69709924
11	12898399	0.458926	5919416	75629340
12	13543319	0.424539	5749664	81379004
13	14220485	0.392728	5584780	86963784
14	14931509	0.3633	5424624	92388408
15	15678084	0.336078	5269062	97657470
16	16461989	0.310896	5117960	102775430
17	17285088	0.2876	4971191	107746621
18	18149342	0.26605	4828632	112575253
19	19056810	0.246115	4690160	117265414
20	20009650	0.227673	4555660	121821074

(단위: 원)

주) 1.정기금의 초기값은 7,918,498원으로 가정하였음.

아래의 <표8>에서는 <표1>, <표6>, <표7>에서의 정기금 지급계획 별로 초기값(a) 수준, 정기금의 매기 상승률(g), 적용이자율(i)에 따른 누적 현가의 크기를 비교하였으며, 또 식(2)'에서처럼 매기 일정한 금액의 정기금 지급계획을 하는 경우 <표1>, <표6>, <표7>과 동일한 정기금의 누적 현가를 보여주기 위한 불변 정기금의 수준(a^*)을 하나의 표로 나타낸 것이다.

	식(2)				식(2)'
	초기값(a)	임금상승률(g)	이자율(i)	정기금 누적현가	불변 정기금(a^*)
<표1>	11,001,303원	7%	8.1%	200,000,000원	18,984,572원 (<표2>참조)
<표6>	7,918,498원	7%	8.1%	143,900,000원	13,664,711원
<표7>	7,918,498원	5%	8.1%	121,800,000원	11,563,605원

<표8> 정기금 계획별 비교

이상의 분석 결과 우리는 민사법정 이율 연 5%를 적용하는 정기금 계획은 손해 배상액을 이중적으로 과소평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가정한 <예시1>의 경우 우리는 정기금 지급계획을 할 때 실제의 임금상승률과 이자율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여 계산하면 정기금의 초기값(a)으로 <표1>에서 보여주는 연 11,001,303원의 수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불합리한 현행의 라이프닛쓰식 산정방법에 의해 계산하면 정기금의 초기값(a)은 <표6>, <표7>에서 처럼 연 11,001,303원의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연 7,918,498원의 수준을 적용하여 정기금의 지급 계획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일차적으로 과소평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아직도 경제적 합리성 보다는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상실수익액 현가를 산정하는 라이프닛쓰식 산정방법과 호프만식 산정방법 등 오랜 관행에 의한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는 관계로 이후 정기금 지급 계획 시에도 앞의 A보험회사의 예에서와 같이

연 5%의 금리를 적용하는 정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는 손해배상액 수령권자에게 이중적으로 손해액을 과소지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위의 <표6>과 <표7>의 분석결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식(2)'에 의해 구한 매기 일정한 금액의 정기금 수준(a^*)의 비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예시 1>에서의 순할인비율(R)을 적용하여 계산된 상실수익액 일시불 현가에 근거하여 정기금 계획을 수립 시 식(2)'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매기 18,984,572원이 정기금(a^*)으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현행의 라이프넷쓰식 산정방법에 의한 상실수익액 일시불 현가에 근거하여 정기금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매기 13,664,711원의 정기금(a^*)이 지급되어지게 되므로 실제 지급되어야 할 정기금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정기금이 지급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정기금지급 계획에 있어서 매기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기금의 상승률(즉, 임금 상승률)을 <표3>의 A보험회사 처럼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면 이 제는 매기 11,563,605원의 정기금(a^*)이 지급되어지게 되므로 상실수익액이 이중적으로 과소지급되는 결과가 초래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상실수익액 현가 산정방법 하에서 일시금 지급방법 외에 정기금 지급방법을 실무에서 병행하는 경우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는 정기금 지급계획은 손해배상액을 이중적으로 과소평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정기금 지급계획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세부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앞의 식(1), 식(2)에서와 같이 현실성 있는 순할인비율(R)을 감안하여 상실수익액의 일시금 현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미래의 정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현행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금의 정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손해배상액의 정기금 지급을 금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실무상 정기금 지급방법을 선택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살펴 본 손해배상액의 일시금 지급방법과 정기금 지급방법 간의 선택 조건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손해배상액 수령권자가 일시금 지급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정기금 지급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보다 높은 효용수준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 측에서도 정기금 지급방법을 오히려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보험회사에서 향후 정기금 지급방법의 보다 구체적 세부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의 일시금 지급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상실수익액의 현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현가를 가져다주면서 미래의 일정 기간까지 매기 순차적으로 정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기금 지급계획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 우리는 민사법정 이율 연 5%를 적용하는 정기금 계획은 손해배상액을 이중적으로 과소평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제 향후 정기금 지급계획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세부규정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앞의 식(1), 식(2)에서와 같이 현실성 있는 순할인비율을 감안하여 상실수익액의 일시금 현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근거한 미래의 정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는 보다 합리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주동 · 마승렬,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의 적정성분석」, 『보험학회지 제54집』, 한국보험학회, 1999.12.(1999a)
- _____. _____, 「미래소득흐름예측을 위한 적정 시계열분석모형」, 『보험개발연구 제10권 제3호』,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9.12.(1999b)
- _____. _____, 「적정모형의 선택을 통한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보험학회지 제55집』, 한국보험학회, 2000.4.
- 마승렬, 「상실수익액 순환인율에서의 평균값 사용의 타당성」, 『보험학회지 제58집』, 한국보험학회, 2001.4.(2001a)
- _____, 「상실수익액 산정 시 적용할 순환인율의 결정에 관한 연구」, 『금융학회지 제6권 제1호』, 한국금융학회, 2001.8.(2001b)
- _____, 「순환인율 모형에 적용할 기초소득수준의 결정」, 『보험개발연구 제12권 제2호』,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1.9.(2001c)
- _____, 「임금과 할인율의 장기예측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1.12.(2001d)
- 이주홍, 『실무손해배상책임법』, 박영사, 1996.
- Brookshire, Michael L., and Thomas R. Ireland, “Converting from a Present Value Lump Sum to a Future Payment Stream”, *Journal of Forensic Economics* 7(2), 1994, pp.151-157.
- Prahl, Robert J., Stephen M. Utrata, and Frederick R. Hodosh, “Liability Claim Concepts and Practices”, *Insurance Institute of America*, 1985.
- Romans, J. Thomas, and Frederick G. Floss, “Structured Settlements and the Interest Rate Switch”, *Journal of Forensic Economics* 12(1), 1999, pp.57-64.

Abstracts

In some claimants cases, a structured settlement can be preferred to a lump sum settlement as a means of settling liability claims and with regard to the benefits received by insurers they should promote periodic payment settlement rather than lump sum cash settlement. In this study we analysed a viable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method of settling bodily injury liability claims.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we verified that a plan to apply 5 % of legal interest rate in the case of using periodic payment settlement will lead to underestimate the present value of lost earnings twice over. So we should calculate future lost earnings correctly using reasonable net discount ratio, and then device plans for structured settlements.

※ Key Word: periodic payment, lost earning